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넓히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금 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간병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특별진찰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안 제72조)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요양 도중 불가피하게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안 제117조제1항제5호 신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 필요성 평가를 위해 진찰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제14호 신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보험급여의 금액에서 각각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급여의 금액”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제125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급여를 일시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금액에서 각각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그 산정기준이 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과 같은 장애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장애인연금 중 장해보상연금은 그 장애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제72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 ----- ----- ----- --- 보험급여의 금액----- ----- -----. ----- ----- ----- ----- ----- -----.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①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 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13. (생략) <u><신설></u>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 -----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u> <u>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u> <u>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705